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1가단5024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준석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9. 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23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4. 9. 3.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2. 21. 접수 제189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31,23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7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대위변제 지연손해금률 : 연 7%)을 체결하고, 2017. 8. 9.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고 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DOCUMENT: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상한범위) 내용(이미지 생략)

나. D은행은 2019. 11. 12. 원고에 피고 A이 분할상환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6. 23. D은행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31,450,5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후 240,9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1,239,542원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20. 1.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다음날인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 한다), 다음날인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 A은 2020. 5. 8.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4279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11. 10. 피고 B에 대한 제2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명령이 내려졌으며, 2020. 12. 29. 피고 A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2021. 7. 7.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21. 7. 24. 확정되었다. 피고 A은 2021. 3. 26. 다시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27634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21. 8. 19. 피고 A에게 '피고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서 삭제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2. 15.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인가결정을 하였다. 피고 A은 위 절차에서 피고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피고 B에 대한 제2 처분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임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로 2024. 6. 10. 항고를 기각하였고, 2024. 7. 16. 위 개인회생절차 또한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잔액 31,23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대위변제일인 2020. 6. 23.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유사한 쟁점인 피고 A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피고 B의 매매계약 채권에 대한 부인권 다툼으로 인해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또한 함께 장기간 추정된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된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구상금 채권의 개연성이 커진 것 또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이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여 현실화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일인 2020. 1. 20. 당시 피고 A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강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동주택 2층 F호(58.94㎡)로 각 시가로 추정되는 피고 A의 취득 가액 8,000만 원(피고 B에 대한 거래가액은 종전 취득 가액 보다 2,000만 원 염가로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다) 및 처분행위일 무렵인 2020. 2. 3.자 거래가액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이고, 소극 재산은 피고 B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따로 이자 약정을 주장한 바 없다) 및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4,375,000원(보증사고 당시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량 합계 84,375,000원 가량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2) 이 사건 제2 처분행위일인 2020. 2. 20.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 재산은 피고 B에 대한 5,000만원 채무 및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4,375,000원으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 법률관계가 설정된 바 없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인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처분행위에 기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2. 21. 접수 제189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선의 여부

가. 피고 B 주장 요지

피고 B는 2017. 3. 6. 피고 A와 공동으로 투자(매수대금 총 8,000만 원 중 5,000만 원 피고 B가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후 투자 지분에 대한 임대료 정산을 받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피고 B에게 본래 차용증 원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불과 1달 여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계약 바로 다음날에 하는 이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2) 매매가액도 취득가액인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염가에 매도한데다(피고 A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시가는 7,000만 원이다) 근저당권최고액과 차액인 1,000만 원을 수수한 내역도 없는 점, (3) 피고 B가 주장하는 공동 투자 내역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원정

별지